

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|

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절차

2024.4.



금융감독원

목 차

I. 외부감사법의 개요

II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
2.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1.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
2. 선임절차
3.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
4. 외부감사인의 선정
5. 감사인 선임 보고
6. 사후 평가

IV. 기타제도

I. 외부감사법의 개요

외부감사란?

외부감사 정의

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

- 불이행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* 외감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

관련 법령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

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(금융위원회 고시), 동 시행세칙 (금융감독원장 세칙)

II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①

(1) 주권상장법인

(2) 상장예정법인 (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)

(3)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(아래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구분	주식회사	유한회사
자산총액	500억원 이상 (직전 사업연도 말)	
매출액	500억원 이상 (직전 사업연도,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)	
복수 기준 해당	(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)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	(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)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

II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1.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②

구분	사 례	요건해당 여부	외감여부
주식회사 (유한회사)	자산 119억원, 부채 69억원, 매출액 500억원 , 종업원 99명, (사원 49명)	매출액 500억원 이상	외감대상
유한회사	자산 120억원 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, 사원 49명	5가지 기준 중 2개(자산, 부채) 에 해당	비외감대상
주식회사	자산 120억원 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	4가지 기준 중 2개(자산, 부채) 에 해당	외감대상
주식회사	자산 119억원, 부채 70억원 , 매출액 99억원, 종업원 99명	4가지 기준 중 1개(부채) 에 해당	비외감대상

II. 외부감사 대상 회사

2.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

판단 시점

직전 사업연도말* 개별(별도)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

* 예) 2024년도 외감대상 판단은 2023년말 개별(별도) 재무제표로 판단

종업원

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(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)

사원(유한회사)

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1.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

선임 기한

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(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)

다만, 직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(초도감사)는 4개월 이내

- 선임기간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외감법(§11①2호)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

계약 기간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*, 금융회사

*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,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는 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, 그 외 회사는 전기말 자산 5천억원 이상(이하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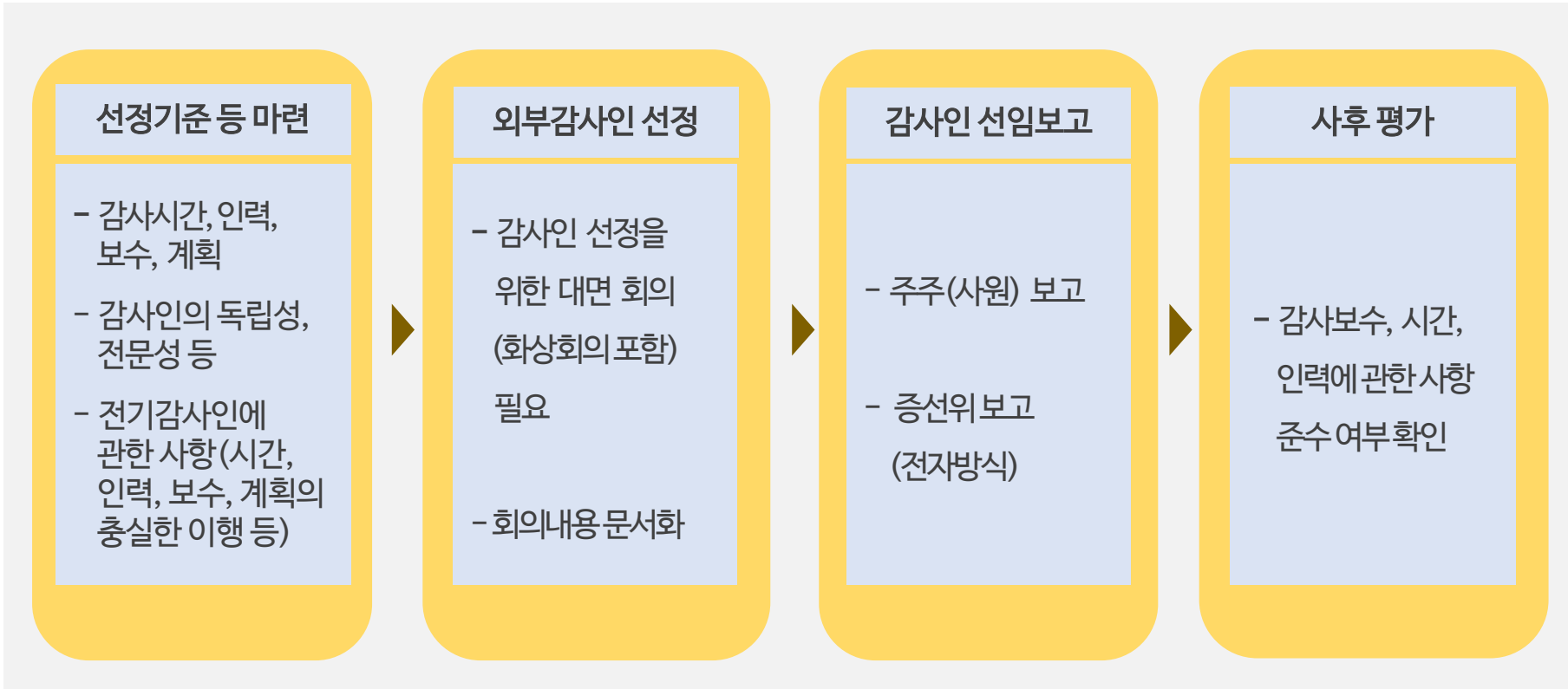
-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
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, 유한회사

-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2. 선임절차

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3.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

기준 및 절차 마련

감사, 감사위원회*는 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**를 마련

- *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,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: 대표이사가 마련
- **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,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승인이 요구됨

마련 사항

감사시간·인력·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

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

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

- 감사시간·인력·보수·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①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

(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) 감사위원회가 선정

(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) 감사인선임위원회*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

* Ⅲ - 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- 감사인선임위원회 참고

금융회사가 아닌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

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가 외부감사인을 선정

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(상법:자본금 10억원 미만)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

유한회사

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,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가능

- 다만,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 회사는 **사원총회** (대면회의 필요, 영상회의도 가능) 의 승인 필요

전기감사인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

금융회사가 아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상기의 선정절차 없이 전기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

- 다만,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선정 절차 필요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- 감사인선임위원회

감사인선임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)

구분	내용
구성원수	· 5인 또는 6인
구성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사 1명 · 사외이사 2명 이내 (5인 구성 시 사외이사 1명) ·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인 · 일반 주주 1인 (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, 임원 등 제외) ·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 임직원
외부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득이한 경우* 경영·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 가능 * 질병, 외국거주, 소재불명, 연락두절, 출석거부 등으로 해당 위원 구성 불가
참석	· 재적위원 2/3이상
승인	·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	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 동의 시,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4. 외부감사인의 선정 ④ - 감사인선임위원회

위원구성 관련 주요 예외사항

- √ **주주위원** : 지배주주(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), 회사의 임원인 주주,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
 - 다만,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 제외
- √ 주주, 채권금융회사, 기관투자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
 -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(단, 외부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)
- √ **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**
 -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·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(외부전문가)으로 구성가능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5. 감사인 선임보고 ①

금융감독원 보고

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(금감원 위탁)에 전자보고*

*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,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I 참조

주주 등에 보고

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또는 통지

- ①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
- ②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
- ③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(감사계약 종료시까지)

Ⅲ. 감사인 선임제도

5. 감사인 선임보고 ②

감사인 선임보고 시 제출서류

- ① 회사가 작성한 선임보고 공문
- ② 감사계약서 사본
- ③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
- ④ (위원회 등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) 감사위원회, 감사인선임위원회, 사원총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의사록)
- ⑤ (감사인을 변경한 회사의 경우)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*

*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서 제출

III. 감사인 선임제도

6. 사후평가

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

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*의 이행여부를 확인

*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

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의 감사는
상기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

(준수여부 확인결과 문서는 차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시에 일괄제출가능)

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,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

대표이사가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

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①

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기한

외감대상회사는 아래의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

① 개별(별도)재무제표

- 정기총회 개최 6주 전

*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

② 연결재무제표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는 회사: 정기총회 개최 4주 전

*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: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

*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

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②

증선위 제출의무

√ 주권상장법인· 대형비상장회사· 금융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(같은 날)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

√ 아래의 방법으로 전자제출

구분	제출 방식
상장회사	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http://filing.krx.co.kr)에 제출
대형비상장회사, 금융회사	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에 제출

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의 제출

증선위 제출의무

- √ 대형비상장회사는 매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」 제출
- √ (제출서류) ①공문, ②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,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④법인등기부등본
- √ (안내자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⇒ 업무자료 ⇒ 회계 ⇒ [외부감사인 선임] ⇒ [외부감사 FAQ] ⇒ “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” 반드시 참조
- √ (제출처)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(<http://eacrs.fss.or.kr>)에 제출

IV. 기타 제도

기타 제도 안내

감사계약의 해지

법령상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 해지 가능(감사인 임의교체 불가)

감사인 지정제도

감사인 미선임 등 법규상 지정 사유에 해당 시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수 있음

감사인 자격제한

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만 가능

감사인 등록제도

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음

자세한 사항은 ‘금융감독원 홈페이지-업무자료-회계-외부감사인 선임’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

본 강의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
'업무자료-회계-외부감사인 선임- 외부감사 FAQ'에
게시되어 있습니다



금융감독원